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대재해 발생 관련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요건 명시>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0007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대재해 발생 관련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요건 명시(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중양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7. 16.

다. 회 부 일 : 2026. 7.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입찰 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하위 법령에서 감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1건의 사고만으로도 사실상 입찰 자격이 상실되는 수준의 강력한 감점을 받을 수 있어 비례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전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사전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심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중대재해 발생 관련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요건 명시

(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음. <후단 신설>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이 경우 사전심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업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함 (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1)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

이에 따라 계약예규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서는 사전심사를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고, 양자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경우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 이상으로 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심사기준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 별표 2 및 3을 고려하여 해당공사의 성질·내용 등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③ 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 이상
-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 ④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이상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별표2를 적용
 -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 가-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가-2.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나. 공항건설공사
 - 다. 댐축조공사
 - 라. 에너지저장시설공사
 - 마. 간척공사
 - 바. 준설공사
 - 사. 항만공사
 - 아. 철도공사
 - 자. 지하철공사
 - 차. 터널건설공사(단,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 카. 발전소건설공사
 - 타.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 파. 폐수처리장건설공사
 - 하.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 거. 관람집회시설공사
 - 너. 전시시설공사
 - 더. 송전공사
 - 러. 변전공사
2. 제1호 이외의 공사는 별표3을 적용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배점을 규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 2] 및 [별표 3]²⁾에서는 건설안전과 관련하여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 또는 통보한 자에 대한 감점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 감점 2점, 2명 발생한 경우 감점 3.5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감점 5점에 해당함.

그런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서 총점 90점 이상을 받아야만 적격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 감점을 받게 되는 경우 적격자로 선정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전심사에서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업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입찰 업체가 안전조치 등 산업안전 관련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전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전심사에서 책임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다만, 다양한 사전심사 항목 중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산

2) [별표 2], [별표 3]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참조

업안전보건법」의 다른 의무위반 등 다양한 심사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른 심사항목과의 균형성 측면에서의 논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한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의 경우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³⁾, 제39조(보건조치)⁴⁾ 또는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⁵⁾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도

3)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사전심사 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 2]

주7) 건설안전 분야 평가방법

1.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3.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 3]

주2)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지역업체참여도·신인도분야 평가방법은 별표2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재정경제부는 사전심사의 세부항목과 구체적 심사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경제·사회적 여건 급변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곤란하며, 중대재해 관련 심사항목·기준만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심사항목 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계약의 방법) ① (생략)	제7조(계약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 . 이 경우 <u>사전심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업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참고: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별표 2])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경험	40 (45)	가.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 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30 (34) 20 (22) 10 (11)
2. 기술 능력	40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라. 기타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25 4 8 3
3. 시공평가결과	10		10
4. 지역업체참여도	5		5
5. 건설안전	5	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비율 나.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다.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 이상 받은 자 라.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 마.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2회 받은 자 • 3회 이상 받은 자 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또는 통보)한 자 • 사망자 1명 • 사망자 2명 • 사망자 3명 이상 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인증을 받은 자	3 2 -0.5 -1 -2 -0.5 -1 -2 -3.5 -5 1

6. 신인도	+3 -7 <개정 2012.7.4., 2019.12.18., 2025.10.30. >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2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삭제>
		2) <삭제 2019.12.18.>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별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012.7.4. 라목에서 이동, 개정 2015.9.21>	-5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개정 2015.9.21.>	+2
		2) 해당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신설 2011.5.13.>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2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3) 최근 2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개정 2012.7.4.>	-7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에서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신설 2008.12.29, 개정 2012.7.4.>	-7
		5)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2
		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1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5) <삭제 2025.10.30.>	<삭제>
		6)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0.5
		· 2회이상 받은 자	-1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신설 2012.7.4.>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2) 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개정 2021.12.1.>	+2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신설 2018.12.31.>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3
		· 2등급인 자	+2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 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5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개정 2020.12.28.>	+0.5

(2) 그 외 공사([별표 3])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경험	40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공사 가.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5년간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국가유산공사 등의 업종별 실적합계	30 (34) 10 (11)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최근5년간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국가유산공사 등의 업종별 실적합계	40 (45)
2. 기술능력	40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0 10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0 10
3. 시공평가결과	10	가. 시공평가결과	10
4. 지역업체참여도	5		5
5. 건설안전	5	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비율	3
		나.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다.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0.5
		· 1회 받은 자	-1
		· 2회 이상 받은 자	-2
		라.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	
		마.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0.5
		· 2회 받은 자	-1
		· 3회 이상 받은 자	
		바. 최근 1년동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	
		· 사망자 1명	-2
		· 사망자 2명	-3.5
		· 사망자 3명 이상	-5
		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인증을 받은 자	1
5.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2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삭제 2019.12.18.>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개정 2015.9.21.>	<삭제> -5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개정 2015.9.21.> 2) 해당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신설 2011.5.13.>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3) 최근 2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개정 2012.7.4.>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신설 2008.12.29, 개정 2012.7.4.> 5)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2 +2 +1 -7 -7 +2 +1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5) <삭제 2025.10.30.> 6)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삭제> -0.5 -1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신설 2012.7.4.> 2) 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2 +2
	-7 <개정 2019.12.18., 2025.10.30.>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신설 2018.12.31.>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개정 2021.12.1.>	+3 +2 +2.5 +0.5

문 의 처

02)6788-5160